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00호

나.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찬성자 10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2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이 시민의 문화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임.

 이에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동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있어 문화향수와 창의력 증진이 섬세 하게 필요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을 포괄적 범위인 시 민과 별도로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서울문화재단 업무(안 제3조)

-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연・시각・문학 장르 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청년, 장애예술가들의 창작공간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이라는 서울문화재단 업무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 등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명시하여 이들의 문화향유를 증진 시키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업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시민</u> 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4. <u>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u> <u>등 시민</u>	
5. · 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서울문화재단의 업무에 적시되어 있는 시민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6조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동 개정안이 별도로 명시한 대상과 그 범주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판례〈대법원 2007추 42〉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이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적시하는 것은 판례가 명시하고 있듯 자치입법권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으로 시민의 대상을 열거하였다 할 수 있겠지만 '등'이라는 예시적 단어를 사용하였기에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대상 일부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대상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기에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이 시민의 범주에 있음에도 추가로 적시하는 것이 평등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음.

¹⁾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시민'이라는 포괄적 범주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보다 추진 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와 법적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00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23. 10.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시민의 문화 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므로,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호) 			
추진경과	○ '23. 10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제3조제4호의 문화재단 업무에서 일컫는 "시민"의 대상 범주에 이미 청소년,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미혼남녀를 포괄하고 있어,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소년, 청년, 미혼남녀, 장애인, 노인이 시민을 일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화 향수의 대상을 오히려 한정하여 형평에 어긋날 수 있고, 청년과 미혼남녀는 대상 중복되어 적절하지 않음 			
대응방안	○ 해당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 방문 및 부서 검토의견 설명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윤선희(☎ 2133-2552) 담	당 고은희(☎2133-2555)	